# **서비스**(보안관제) 계약서

콜마너(이하 "고객"이라 함)과 주식회사 안랩(이하 "안랩"이라 함)은 붙임의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계약명	콜마너 보안관제서비스
계약금액	금 삼백사십육만원정(₩3,460,000)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계약보증금	해당 사항 없음
하자보증금	해당 사항 없음
지체상금율	해당 사항 없음
대금지급조건	매월 말일 지급
기타 계약조건	

위 계약의 증거로서 "고객"과 "안랩"은 계약문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붙임문서

- 1. 계약일반조건
- 2. 계약특수조건-서비스(보안관제)
- 3. 계약세부내역-서비스(보안관제)

2016년 08월 16일

## "고객"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유나프

라자 빌딩 7층

상 호 : 주식회사 콜마너

대표자 : 김 영 익



#### "안랩"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상 호 : 주식회사 안랩

대표자 : 권 치 중

( 1

#### 1. 충칙

1.1 "고객"과 "안랩"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계약목적

2.1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제품/서비스 내역은 붙임3. "계약세부내역"과 같다

#### 3. 계약기간

3.1 본 계약의 기간은 붙임2. "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 4. 계약문서

- 4.1 계약문서는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세부내역"으로 구성된다.
- 4.2 본 계약조건에 의하여 각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 4.3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는 상호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약세부내역",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의 순서로 한다.

#### 5. 통지

- 5.1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요구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 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완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5.2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문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3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6. 지식재산권

- 6.1 본 계약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작성,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TOOL, Document, 방법론, KNOW-HOW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각 당사자에게 유보된다.
- 6.2 "고객"은 "안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안랩"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내지 권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할 수 없으며, 복제•번역•재배포•재전송•출판•판매•대여•임대•매매•전매•담보설정행위(질권 등)•수정•변경•분석•확장 기타 "안랩"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6.3 "고객"은 "안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안랩"이 제공하는 물품 등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을 제거할 수 없다.

6.4 "고객"은 "안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표·상호·로고 기타 "안랩"이나 "안랩"의 제품,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계약의 목적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7. 비밀유지

- 7.1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 이외로는 비밀정보 및 관련 노하우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 정보라 함은 "고객", "안랩"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 및 그 진행과정을 통해 문서나 구두 혹은 그림, 설계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들로서, 기술적 자료, 교역상 정보, 노하우를 포함한 연구 활동의 부산물•생산 및 판매 계획•생산물•서비스•고객•시장•마케팅•개발물•고안물•진행과정•연구 공식•기술 공학•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구성 정보•재정 또는 그 이외에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 상의 모든 정보들을 의미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7.2 전항에 의거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 7.3 다음의 정보는"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상대방에 제공한 시점에 이미 공지의 사실에 해당되거나 각 당사자들이 적 법하게 취득 내지 개발하여 알고 있는 정보
  - (ii)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차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 (iii) 각 당사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합의 내지 상호 양해한 정보
- 7.4 각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기타 당사자 일방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의 비밀유지의 무의 적용은 배제된다. 단,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7.5 각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 소속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8. 계약의 종료

- 8.1 각 당사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i)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 (ii) 상대방이 해산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제 기되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되지 않거나 영업을 중

단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ii) 상대방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 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상대방 당사 자의 자력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 8.2 본 계약이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안랩"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설치본 등을 "안랩"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거나 "안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안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이 기 지급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 8.3 본 계약이 해지 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8.4 본 조에 의한 해지는 귀책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9.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9.1 각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간접적 손해, 우발적 손해, 징벌적 손해, 2차적 손해, 혹은 이익의 상실, 수입의 상실, 데이터의 상실, 기회손실등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0.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10.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11. 불가항력

- 11.1 양 당사자는 전쟁, 사변, 테러, 폭동, 노동쟁의,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야기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된다.
- 11.2 불가항력 사실의 발생 및 종료는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 제공물과 피해를 받은 주문 등을 서면통지로서 취소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정상적인 재해복구 절차를 따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또는 공급되었거나 제공된 서비스 제공물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12. 청렴준수의무

- 12.1 각 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12.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 13. 분쟁해결

- 13.1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 13.2 제1항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14. 기타

- 14.1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유일한 합의이고 본 계약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14.2 계약 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과 "안랩"은 별도의 부속합의서 등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 14.3 법령이나 기타 관계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화 되거나 이행 불가능한 조건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본계약의 의도와 목적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 1. 총칙

1.1 본 계약은 "고객"과 "안랩"이 "보안관제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 2.1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1.1 "보안관제서비스"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안랩"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안 관련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말한다.
  - 2.1.2 "용역업무"란 계약문서에 따라 "고객"이 "안랩"에게 의뢰하고 "안랩"이 "고 객"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 2.1.3 "보안사고"란 "안랩"이 위탁받은 "고객"의 보안 관련 시스템이 보호하는 장비에 대한 "외부"의 해킹 또는 공격 등에 의한 장비 장애,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상을 말한다.
  - 2.1.4 "개인정보 등"이란 "안랩"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집, 제공받은 "고객"의 회원의 개인정보, 거래정보, 접속정보 등을 말한다.
- 2.2 본 계약서에서 정의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해석 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 3. 계약문서

3.1 계약문서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세부내역"으로 구성된다.

#### 4. 계약기간 및 조건

4.1 본 계약기간은 붙임3. "계약세부내역"과 같다. 단,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종료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본다.

[지평 의견]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종료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2 계약 기간 중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과 "안랩"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5. 당사자의 의무

- 5.1 본 계약과 관련한 "안랩"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5.1.1 "안랩"은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신속, 정확을 기하도록 한다.
  - 5.1.2 "안랩"은 "고객"과의 계약상의 의무 및 붙임3. "계약세부내역"에 명시된 서

비스 항목을 성실히 이행한다.

- 5.1.3 "안랩"은 "고객"의 서비스 대상 보안시스템의 장애, 보안사고를 인지하였거나 이를 해결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 5.2 본 계약과 관련한 "고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5.2.1 "고객"은 "보안관제서비스"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안랩"에 제공한다.
  - 5.2.2 "안랩"이 제공하는 "보안관제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고객"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설비에 대한 변경이 예정된 경우, "고객"은 이를 지체없이 "안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5.2.3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안랩"이 설치한 보안시스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 5.2.4 "고객"은 "보안관제서비스" 대상인 보안시스템의 문제점, 장에 또는 보안사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안랩"에게 통지한다.

#### 6. 용역업무

- 6.1 본 계약에 의하여 "안랩"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안관제서비스"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수준은 붙임3. "계약세부내역" 기재와 같다.
- 6.2 본 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과 "안랩"이 서비스의 범위 및 그에 대한 대가 등을 별도의 서면 합의로써 구체적으로 정한다.

问事。

#### 7. 용역결과물의 제출

- 7.1 "안랩"은 "용역업무"를 다음의 기간 내에 완료하여 "고객"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한다.
  - 7.1.1 서비스 제공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붙임3. "계약세부내역"에 정한 "용역업무"수행
  - 7.1.2 서비스 제공 익월 [5]일까지 붙임3. "계약세부내역"의 "용역업무"에 대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10]일까지 산출물에 대한 방문 보고 수행

#### 8. 검수

- 8.1 "안랩"이 각 "용역업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 "고객"에게 검수 요청할 경우, "고객" 은 양사가 합의한 조건(SLA)에 따라서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하 본 조에서 "검수 시한"이라 한다.) "안랩"이 완료한 용역 업무를 검수한다.
- 8.2 "고객"이 검수 시한 이내에 검수 완료 여부를 "안랩"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고 객"이 해당 용역 업무에 대하여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9.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9.1 "고객"이 "용역업무"의 대가로 "안랩"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및 그 지급조건은 별첨3. 의 "계약세부내역"에 따른다.

#### 10. 소유권

- 10.1 본 계약에 따라 "안랩"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생성 또는 "고객"에게 제공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안랩"에게 유보된다. 단, 별도 합의에 의하여 "고객"에게 권리를 귀속하기로 한 결과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0.2 9.1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권리가 귀속된 결과물에 대하여 "안랩"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11. 보증

- 11.1 "안랩"은 본 계약에 따라서 자신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 업무, 결과물, 권리의 내용 및 형식이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 11.2 "안랩"이 제공한 용역 결과물과 관련하여 "고객"과 제3자 사이에 제3자의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안랩"은 "안랩"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을 방어하며 그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베상한다.
- 11.3 전항의 분쟁이나 소송 발생시 "고객"은 즉시 그 사실을 "안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2.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 12.1 본 계약과 관련한 "안랩"의 의무범위 내에서 "안랩"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안사고" 가 발생한 경우, "안랩"은 "고객"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그 손해배상액은 월 용역대금의 [3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12.2 다음의 각 사유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랩"은 면책된다.
  - (i) 본 계약문서에서 "고객"의 업무범위 또는 책임영역으로 명시한 부분에서 보 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 (ii) "고객" 또는 "고객"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 (iii) 본 계약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안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안시스템의 설정을 조작, 변경한 경우
  - (iv) "안랩"이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해소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고객"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 (v) 보안시스템의 사양 및 성능으로는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공격으로 인한 경우
  - (vi) "고객"의 계약대금 연체 등 "안랩"의 귀책사유 없이 보안서비스 제공이 중 단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 12.3 "안랩"은 계약문서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도 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및 영업기회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13. 계약이행보증

- 13.1 "안렙"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객"에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한다. 단, "안랩"과 "고객" 협의를 통해 이를 생략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 기타 "고객"이 승인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3.2 "안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본 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금에 충당할 수 있다.

#### 14. 개인정보보호

- 14.1 "안랩"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14.2 "안랩"은 "고객"의 회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위반 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4.3 "고객"은 "안랩"이 본 조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안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안랩"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15. 기타

- 15.1 "안랩"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등(이하 본 조에서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경위 "안랩"은 자신의 임직원 등이 "고객"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5.2 "안랩"은 전항의 출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임직원 등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허용된 장소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며, 본 계약의 이행과정 및 본조 제1항의 출입을 통하여 알게 된 "고객"의 일체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복사, 촬영, 누설, 유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5.3 "안랩"이 임직원 등이 "고객"의 관련 규정 등에 위반하여 "고객"의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안랩"의 임직원 등의 손해에 대하여 "고객"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15.4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개인정보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상대 방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2. 관제대상 장비

구분	내역	수량	금액(단위: 원)
1	방화벽(FortiGate 200D_임대관제 서비스)	1	850,000
2	방화벽(Juniper ISG1000_순수관제 서비스)	1	450,000
3	침입차단 시스템(IBM GX4004_임대관제 서비	1	1,050,000
	스)		
4	웹 방화벽(PentaSecurity Wapples-100_임대관	1	1,050,000
	제 서비스)	,	
5	AhnLab V3 백신_임대	2	60,000
월 금액 총계(부가세 별도)			3,460,000
년 금액 총계(부가세 포함)		Contract of	45,672,000

# 3. 관제서비스 내역

서비스내용	세부사항
AhnLab Sefinity	보안솔루션 운영 서비스
Monitoring	- 보안솔루션 원격 관리/제어
	- 보안정책 구성 및 원격 Update
	- 보안솔루션 및 활동상황 모니터링
	- 실시간 로그 백업(3개월)
	통합 이벤트 모니터링(7*24*365)
	- 24시간 보안시스템 장애/성능 모니터링
	- 24시간 보안 이벤트 통합 감시
	- 24시간 장애감시 및 대응
	장애처리 서비스
	- 네트워크 장애감시 및 대웅
	- 침해시도에 대해 1, 2차 대응 팀에 의한 대응
	- 고객신고부터 완료 시까지 일관성 있는 처리
	Reporting 서비스

- 월간 관제서비스 보고서 발송 / 정기적인 보안정보 제공
- Web을 통한 고객 사 리포트 조회 가능

#### Help Desk(24시간)

- 보안 기술 지원
- 서비스 개선 및 불만사항 접수

#### 4.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 A. "고객"은 "안랩"에게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금삼백사십육만원정(₩3,806,000/ 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 B. (서비스대금을 월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안랩"은 [매월 말일]까지 "고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고객"은 대금청구 [익월 말일]까지 전항의 계약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C. "고객"이 2개월 분의 서비스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안랩"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위 통지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때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